



2026. 4. 17.(금) 09:30

제319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검 토 보 고 서

남양주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운 영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서 용 관

남양주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경과

- 발의년월일: 2026. 4. 7.
- 발 의 자: 전해연 의원 등 8인

2. 제안이유

- 우리시의회 포상의 적격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적심사위원회 구성에 외부 민간위원을 포함하도록 하고, 공적심사 위원회 제척 및 회피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대상자 선정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공적심사위원회 외부위원 위촉 및 제척·회피 규정 신설(안 제12조)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 나. 예산조치 : 붙임2 (비용참조)
- 다. 관련부서 : 의회사무국
- 라. 입법예고 : 2026. 4. 7. ~ 4. 13.(6일간) / 의견없음

5. 검토의견(전문위원 서용관)

- 본 안건은 남양주시의회 포상과 관련한 제도적 투명성과 청렴도를 제고하기 위해 발의된 안건으로서, 주요 내용으로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사항이었던 심사위원의 외부 민간위원 위촉과 심사위원의 제척·회피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공적 심사의 내부 통제 절차 강화에 따른 포상 공정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별다른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참고-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 개선권고안(24. 6.) 발취>

개선권고 과제	권고 대상기관
④ 공적심사위원회의 공정성·객관성 담보	
- 포상대상자 추천위원 및 포상대상자와 이해관계에 있는 심사위원에 대한 제척·회피 규정 마련	(인천) 옹진군 (부산) 기장군 (경기) 성남시, 부천시, 남양주시 , 안양시, 평택시, 시흥시, 광주시, 하남시, 군포시, 양주시, 오산시, 구리시, 의왕시, 양평군, 동두천시, 가평군, 연천군 (충북) 제천시, 보은군, 진천군, 음성군 (충남) 천안시, 아산시, 서산시, 논산시, 계룡시, 금산군, 부여군, 청양군, 예산군 (전북) 군산시, 익산시, 남원시, 완주군, 진안군, 무주군, 임실군 (전남) 목포시, 여수시, 구례군, 보성군, 해남군, 영암군, 함평군, 영광군 (경북) 포항시, 김천시, 상주시, 경산시, 의성군, 고령군, 성주군, 칠곡군, 예천군 (경남) 진주시, 통영시, 사천시, 김해시, 밀양시, 양산시, 함안군, 창녕군, 남해군, 하동군, 산청군, 거창군 (강원) 원주시, 태백시, 속초시, 삼척시, 양양군
- 시민단체 등 외부기관이 추천한 외부위원 참여 보장	(인천) 옹진군 (부산) 기장군(경기) 성남시, 부천시, 남양주시 , 안양시, 평택시, 시흥시, 광주시, 하남시, 군포시, 양주시, 오산시, 구리시, 의왕시, 양평군, 동두천시, 가평군, 연천군 (충북) 제천시, 보은군, 진천군, 음성군 (충남) 천안시, 아산시, 서산시, 논산시, 계룡시, 금산군, 부여군, 청양군, 예산군 (전북) 군산시, 익산시, 남원시, 김제시, 완주군, 진안군, 무주군, 임실군 (전남) 목포시, 여수시, 구례군, 보성군, 해남군, 영암군, 함평군, 영광군 (경북) 포항시, 김천시, 영천시, 상주시, 경산시, 의성군, 고령군, 성주군, 칠곡군, 예천군 (경남) 진주시, 통영시, 사천시, 김해시, 밀양시, 양산시, 함안군, 창녕군, 남해군, 하동군, 산청군, 거창군 (강원) 원주시, 태백시, 속초시, 삼척시, 양양군

☑ 「지방자치법」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제29조(규칙)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 또는 조례의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해당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남양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2호

3. 미첨부 사유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 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비용의 추계가 어려운 경우

4. 작성자

- 의회사무국 의정팀장 신상민